

깨끗한 온천 · 건강을 지키는 온천 · 국민과 함께하는 온천



온천법령집



행정안전부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목 차

온 천 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1	제1조(목적)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2조(온천의 성분 기준) 1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		
제3조의2(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 3		
제4조(삭제) 4		
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등) 4	제3조(온천공보호구역의 규모 및 지정 절차) .. 4	제2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 신청) 4
		제3조(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고시 등) 6
제6조(온천공보호구역 지정절차 이행) 6	제4조(온천우선이용권자에 의한 온천공보호 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승인 신청) 6	
	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등) 7	
제7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8	제6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8	제4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8
제8조(적용의 배제) 11		
제9조(보양온천의 지정) 11		
제9조의2(온천도시의 지정) 13		

온 천 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제10조(온천개발계획의 수립) 13	제7조(온천개발계획의 수립 등) 13 제8조(온천우선이용권자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 신청 등) 15 제9조(개발계획의 변경) 16 제10조(개발계획의 승인 취소 요청) 19 제11조(온천개발자문위원회) 20	제5조(온천개발계획의 승인·변경신청) 14
제10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등 의제) .. 20	제12조(인·허가 등의 의제) 20	
제10조의3(사전환경성검토 등) 27		
제10조의4(개발사업의 시행) 28		
제11조(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등) 30		제6조(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30
제12조(굴착허가) 30	제13조(굴착허가 신청) 30	제7조(굴착허가신청 등) 30
제13조(원상회복의무 등) 32	제14조(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32	
제14조(동력장치설치의 허가) 35	제15조(동력장치의 설치 및 허가 신청) 35	제7조의2(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34 제8조(동력장치의 설치허가신청) 35
제15조(온천보호를 위한 토지굴착 제한) 36	제16조(지하수 개발 허가) 36	제8조의2(수문관측시설) 36
		제9조(지하수개발 허가신청) 36

온 천 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제16조(온천의 이용허가) 37 제16조의2(온천이용허가 시 인·허가등 의제) 41 제17조(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 등) 42 제18조(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 43 제19조(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43 제20조(온천의 공동급수) 45 제21조(온천발견의 신고 등) 45 제22조(온천발견 신고 수리의 제한 등) 47 제23조(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 등) 48	제17조(온천의 이용허가) 37 제18조(온천과 관련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행위 금지) 40 제19조(허가를 위한 조사 의뢰) 41	제10조(온천의 이용허가신청) 37 제10조의2(온천표시) 40 제11조(온천의 수질기준 등) 42 제12조(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등) 43 제13조(온천발견신고의 수리등) 45 제13조의2(온천발견신고의 반려) 49 제14조(삭제) 49
제24조(온천자원의 보전·관리) 49		제15조(온천자원의 보전·관리) 50 제16조(삭제) 50 제17조(허가증의 교부) 51

온 천 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제24조의2(온천자원의 관측·정보체계 구축) 51 제25조(출입검사 등) 51	제20조(온천자원의 관측) 51	
제26조(온천종사자 교육) 52 제27조(온천협회의 설립 등) 53	제21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54	제18조(관계공무원 출입증표) 52 제18조의2(삭제) 52 제19조(온천종사자 교육) 52
제27조의2(협회의 사업 등) 54		
제28조(대도시에 관한 특례) 55		
제29조(시정요구) 55		
제30조(청 문) 55		
제31조(수수료) 55	제22조(수수료) 55	
제32조(벌 칙) 56		
제33조(벌 칙) 56		
제34조(벌 칙) 57		
제35조(벌 칙) 57		
제36조(양벌규정) 57		
제37조(과태료) 58		
부 칙 59	부 칙 59	부 칙 59

온 천 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p>제 정 1981. 3. 2 법률 제03377호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03910호 전문개정 1995.12.30 법률 제05121호 일부개정 1997. 1.13 법률 제05286호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05453호 일부개정 1999. 1.18 법률 제05627호 일부개정 2000. 1.12 법률 제06119호 일부개정 2001. 1.26 법률 제6390호 일부개정 2002.12.30 법률 제6842호 전부개정 2006. 3. 3 법률 제7856호 일부개정 2008.12.26 법률 제9202호 일부개정 2010. 2. 4 법률 제10005호</p>	<p>제 정 1981. 6.18 대통령령 제10354호 전부개정 1996. 7. 1 대통령령 제15107호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일부개정 1999. 1.29 대통령령 제16093호 일부개정 1999. 2. 5 대통령령 제16102호 일부개정 2000. 5.25 대통령령 제16816호 일부개정 2001. 6.22 대통령령 제17241호 일부개정 2003.12.24 대통령령 제18167호 일부개정 2004. 3.17 대통령령 제18312호 일부개정 2006. 7.21 대통령령 제19615호 전부개정 2010. 8. 4 대통령령 제22320호</p>	<p>제 정 1981. 7. 1 내무부령 제350호 전문개정 1996. 7. 3 내무부령 제686호 일부개정 1999. 2. 5 행정자치부령 제34호 일부개정 2000. 6.16 행정자치부령 제99호 일부개정 2001. 6.27 행정자치부령 제137호 일부개정 2003.12.30 행정자치부령 제212호 일부개정 2005. 2.11 행정자치부령 제267호 일부개정 2007. 9.18 행정자치부령 제393호 일부개정 2010. 8.11 행정안전부령 제154호</p>
<p>제1조(목적) 이 법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영은 「온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온천”이란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2. “온천우선이용권자”라 함은 온천발견 	<p>제2조(온천의 성분 기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성분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사용되어도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p>	

온 천 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p>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당해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토지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토지소유권자를 말한다.</p> <p>3. “온천중사자”라 함은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p> <p>4. “온천전문검사기관”이라 함은 온천과 관련한 모든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p> <p>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온천의 발전, 온천문화 창달과 온천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p> <p>②지방자치단체는 온천발견 신고를 수리한 이후에는 당해 온천의 원활한 개발과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온천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이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질산성질소(NO₃-N)는 10mg/L 이하일 것2. 테트라클로로에틸렌(C₂Cl₄)은 0.01mg/L 이하일 것3. 트리클로로에틸렌(C₂HCl₃)은 0.03mg/L 이하일 것	

온 천 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p>제3조의2(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은 온천 및 온천산업의 발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온천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온천보전, 온천문화 창달 및 관련 산업발전의 기본방향과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 2. 온천 개발계획·관리·보전 등의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보양온천의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온천수의 음용화 추진 및 미용 관련 등 온천산업의 발전에 대한 대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5. 온천수 재활용 대책수립과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온천에 관한 주요 정책으로서 행정안전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시·도지사 및 제5조제1항의 시장·군수는</p>		

온 천 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p>종합계획에 따라 온천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p> <p>제4조 삭제</p> <p>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도지사는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을 받아 그 지역을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이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p> <p>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온천개발을 위하여 토지용도를 개발용도에 맞게</p>	<p>제3조(온천공보호구역의 규모 및 지정 절차)</p> <p>①법 제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란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온천개발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p> <p>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구역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p> <p>1. 소규모 온천개발에 관한 계획</p>	<p>제2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 신청) ①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p> <p>②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승인 및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p>

온 천 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p>변경하여야 한다.</p> <p>③시장·군수는 온천공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온천원이 고갈된 경우 2. 개발·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개발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환경 또는 미관을 크게 해치는 경우 4.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p>④제3항제4호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착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⑤시장·군수는 제1항 또는 제3항제1호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예정구역 안의 토지조서 3. 예정구역 안의 온천자원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4. 인근 온천에 미치는 영향 및 자연환경 등 주변의 조건에 대한 의견서 <p>③법 제5조제1항 전단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승인하거나 특별자치도지사가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적정 양수량, 개발가능성 등에 비추어 소규모 온천개발에 적합한 지역인지 여부 2. 토지의 용도 및 개발가능 부지의 면적 3. 이용시설의 종류 및 규모 4. 인근 온천에 미치는 영향, 자연환경 등 주변의 조건 	

온 천 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p>⑥시장·군수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p> <p>제6조(온천공보호구역 지정절차 이행) ①시장·군수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으로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기간에 특별자치도지사가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시장·군수(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지정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시·도지사에게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또는 지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승인(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지정 필요성의 인정을 말한다)을 하면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해당 지역을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p>	<p>제4조(온천우선이용권자에 의한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승인 신청) ①온천우선이용권자는 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제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구역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p>	<p>제3조(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고시 등) ①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고시와 법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고시는 각각 관보 또는 공보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명칭·위치·범위 및 면적 2.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3.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원보호지구가 명시된 지형도면 <p>②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 내용을 30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고시 내용을 30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하고, 특별자치도</p>

온 천 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p>②온천우선이용권자는 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서에 제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구역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p> <p>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등) ①법 제5조제1항 전단 및 제6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은 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이하 “온천원보호지구”라 한다)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온천공보호구역의 개발예정지 안에서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소유토지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한다.</p> <p>1. 도시계획 여건, 건축물 현황 등 주변여건으로 보아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한 지역</p>	<p>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내용을 30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④제1항제3호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절차·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7조를 준용한다.</p>

온 천 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p>제7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①온천전문검사기관이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제1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받는 대신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제2항의 등록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다) 	<p>2. 토지의 용도 및 형태, 지역여건, 기존 온천의 유무 등을 감안하여 소규모 온천개발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지역</p> <p>②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때에는 온천우선이용권자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제6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①법 제5조제1항 전단 및 제6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한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한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후단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검사의 경우에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온천공의 위치 및 현황 2. 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 이 경우 1일 적정 양수량이 1천톤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2개의 온천공을 통하여 확인된 것 	<p>제4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①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온천전문검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의3서식과 같다.</p> <p>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전문인력 및 장비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등록대장예의 등재 및 관보예의 게재 2. 별지 제1호의5서식에 의한 등록증의 교부 <p>③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온천전문</p>

온 천 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p>②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전문인력</p> <p>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p> <p>(1) 지질 및 지반기술사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부존량 조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p> <p>(2) 응용지질·지구물리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부존량 조사업무에 박사학위의 경우 5년, 석사학위의 경우 7년, 학사학위의 경우 10년 이상 종사한 자</p> <p>(3) 온천의 개발·이용과 관련된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p> <p>나. 응용지질 또는 지구물리전공의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부존량 조사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2인 이상</p> <p>다. 화학분야 전공의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온천 또는 지하수 분석업무에</p>	<p>이어야 하고, 1천톤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3개의 온천공을 통하여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p> <p>3. 온천공의 수위 변동 상황</p> <p>4. 온천수의 용출 온도 및 성분</p> <p>②온천전문검사기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1일 적정 양수량을 검사할 때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온천공 외의 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이 150톤 이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미 교부받아 사용 중인 등록증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해당 서류를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1. 전문인력</p> <p>2. 장비</p> <p>3. 대표자 및 영업소 소재지</p> <p>④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p>

온 천 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p>5년 이상 종사한 자 1인 이상</p> <p>2. 장비</p> <p>가. 물리탐사 및 검층장비</p> <p>나. 수소이온농도, 수온, 전기전도도, 총 용해물질(TDS, Total Desolve Solid) 등의 검사를 위한 간이수질측정장비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장비이어야 한다)</p> <p>다. 수위측정장비</p> <p>라. 수량측정장비</p> <p>마. 야외수질분석장비</p> <p>③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전문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온천전문검사를 기피· 		

온 천 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p>지연하는 경우 또는 허위로 검사하거나 검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p> <p>5.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온천 전문검사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 온천검사 실적 및 검사내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p> <p>제8조(적용의 배제) 온천원보호지구 및 온천 공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제7조 내지 제10조·제17조·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9조(보양온천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온도·성분 등이 우수하고 주변환경이 양호하여 건강증진 및 심신요양에 적합하다고</p>		

온 천 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p>인정하는 온천이 있는 온천원보호지구,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이용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보양온천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보양온천을 개발·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자금을 융자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③제1항에 따라 보양온천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양온천의 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p> <p>④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가 변경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경우와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가 변경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양온천의 범위 또는 지정도 변경되거나 해제된 것으로 본다.</p> <p>⑤보양온천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해제, 시설기준 및 보양온천 표시등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p>		

온 천 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p>제9조의2(온천도시의 지정)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관광 등 온천산업육성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천지역을 온천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온천도시의 지정기준 및 해제 등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온천도시에 대하여 온천의 전통성을 보전하고 관리하여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 관련 시책 수립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10조(온천개발계획의 수립) ①시장·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온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그 기간에 개발계</p>	<p>제7조(온천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란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여 온천개발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p> <p>②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효율적인 온천수의 공급을</p>	

온 천 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p>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그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수립을 말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p> <p>②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변 여건, 수요 전망 및 개발 방향 2. 온천자원의 개발·이용·관리·보호 및 기존 온천원에 대한 영향 등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3. 개발면적, 토지이용계획, 온천이용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한 해당 지역의 조성·정비에 관한 사항 4. 폐기물·하수 처리 등 주변환경 정비 및 관광자원 등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③개발계획의 대상지역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자연공원법」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제5조 및 제</p>	<p>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온천이용시설에 대한 온천공별 책임급수망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p> <p>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지구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리적 여건 2.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이 필요한 사유 3. 예정지구 안의 토지조서 4. 예정지구 안의 온천자원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5. 예정지구 면적의 타당성 및 온천의 경제성 검토결과보고서 6. 다른 지역개발계획과의 관련성 <p>④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p>	<p>제5조(온천개발계획의 승인·변경신청) ①영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온천개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p> <p>②영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온천개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p> <p>③영 제7조제3항제3호 및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예정지구 안의 토지조서에는 토지의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축척 2만5천분의 1로 작성된 예정지구 표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p>

온 천 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p>6조에 따른 공원구역, 「관광진흥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농공단지 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공원계획, 관광지등 조성계획,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또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맞게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시장 또는 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특별자치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 2. 온천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시설 등의 배치 3. 주변환경과의 적합성 4. 다른 지역개발계획과의 관련성 5. 온천개발로 인한 수질악화 등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p>제8조(온천우선이용권자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온천우선이용권자는 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제7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지구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p>	

온 천 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p>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온천우선이용권자로부터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제출한 승인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승인신청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승인신청서류를 보완하는 데에 드는 기간은 개발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p> <p>③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개발계획에 관한 의견을 조회해서는 아니 된다.</p> <p>제9조(개발계획의 변경) ①온천우선이용권자(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p>	

온 천 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p>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온천이용시설의 증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온천개발면적 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 확대가 불가피한 경우 3. 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의 감소나 천재지변 등으로 온천개발면적 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 축소가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당시의 여건에 현저한 변동이 있어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p>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승인 신청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p>	

온 천 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p>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③온천우선이용권자(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지구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리적 여건 2. 변경하려는 사유 3. 예정지구 안의 토지조서 4. 예정지구 안의 온천자원에 관한 온천전문 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5. 예정지구 면적의 타당성 및 온천의 경제성 검토결과보고서 6. 다른 지역개발계획과의 관련성 <p>④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p>	

온 천 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p>④ 시장·군수 또는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제 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사항에 맞게 그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발 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온천원이 고갈된 경우 2. 개발·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개발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환경이나 미관을 크게 해치는 경우 4. 개발계획이 수립되거나 승인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p>⑥ 제5항제4호에 따라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착수기한의 연장이</p>	<p>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 1호의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p> <p>⑤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온천개발 면적, 개발계획에 따른 예정지구 또는 온천원보호지구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해당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를 말한다.</p> <p>제10조(개발계획의 승인 취소 요청)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전문 검사기관의 검사(법 제10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와 온천우선이용권자 등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개발 계획 승인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법 제10조제5항제1호의 사유로 개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p>	

온 천 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p>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⑦시·도지사는 제4항 본문에 따라 온천 자원의 변동으로 개발계획을 변경 또는 변경 승인하는 경우 또는 제5항제1호의 사유로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p> <p>제10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등 의제) ①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제10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수립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신고·결정·승인·지정·인가·면허·협의·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p>	<p>사를 제1항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p> <p>제11조(온천개발자문위원회) ①법 제10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법 제21조에 따른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등 온천개발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온천개발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제12조(인·허가 등의 의제)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p>	

온 천 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p>5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제29조에 따른 협의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49조제2호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온 천 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p>아닌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p> <p>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점용·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p> <p>6.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p> <p>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조건부 영업허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p> <p>8.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처분</p>		

온 천 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p>또는 광구의 감소처분</p> <p>9.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p> <p>10.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p> <p>11.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p> <p>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p> <p>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p> <p>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산림보호법」 제9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p> <p>15.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p>		

온 천 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p>산지전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p> <p>16.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p> <p>17.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p> <p>1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p> <p>19. 「자연공원법」 제13조에 따른 도립공원 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허가(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립공원위원회 또는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p>		

온 천 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p>2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p> <p>21.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p> <p>22.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p> <p>2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p> <p>2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p> <p>2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p> <p>26.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등의 사용 심사 및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 및 완료의 신고</p> <p>27.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p> <p>28.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p>		

온 천 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p>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p> <p>29.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p> <p>30.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p> <p>②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p>③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개발계획을 승인 하거나 변경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p> <p>④시·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개발계획 예정 지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p>		

온 천 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p>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5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취소할 때에는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p> <p>⑤시·도지사가 제4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p> <p>⑥제4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 그 지역이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면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p> <p>제10조의3(사전환경성검토 등) 시·도지사는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에도 불구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온천개발로 인한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p> <p>1. 온천개발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개발계획 승인(특별자치도지사의</p>		

온 천 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p>경우에는 수립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 환경성검토 실시</p> <p>2. 온천개발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개발계획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시. 이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 환경성검토는 실시하지 아니한다.</p> <p>제10조의4(개발사업의 시행) ①개발계획을 수립 하거나 그 승인을 받은 시장·군수는 개발 계획에 따른 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와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농업용수권이나 그 밖의 농지개량시설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에 정착한 입목(立木)이나 건물, 그 밖의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물 사용에 관한 권리 		

온 천 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p>4. 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모래와 조약돌</p> <p>②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시장·군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 시행 기간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p> <p>③제1항을 적용할 때 수용 등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목(細目)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p> <p>④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그 보상 및 재결 신청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p> <p>⑤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온천우선이용권자는 개발사업과 그 운영에 관련되는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⑥개발계획으로 인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 처분, 타인 토지에 대한</p>		

온 천 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p>출입 등과 그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p> <p>제11조(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등) 개발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p> <p>제12조(굴착허가) ① 온천수를 용출시킬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온천공의 지름을 늘이기 위하여 용출구를 확대하거나 깊이를 깊게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제13조(굴착허가 신청)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굴착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지 소유권자의 굴착사용 동의서(타인 소유 토지를 굴착하려는 자로 한정한다) 2. 굴착 예정지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자원의 부존 	<p>제6조(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법 제11조에 따른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은 별표 1의 3과 같다.</p> <p>제7조(굴착허가신청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토지굴착 등의 허가·변경허가 또는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토지굴착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용출구 확대 및 심도 증가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설계도서의 제출로 영 제13조제1항제3호의 첨부서류 제출에 같음한다.</p>

온 천 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굴착하고자 하는 토지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거나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토지굴착에 대한 동의를 얻은 자로 한다. 이 경우 동意的 절차와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당해 토지에 온천이 부존되어 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④「지하수법」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4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거나 토지를 굴착하던 중 온천을 발견한 경우에는 제3항의 온천부존가능성 조사결과보고서를 첨</p>	<p>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p> <p>②제1항에 따른 굴착허가를 신청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일 현재 굴착할 토지에 대한 신청인의 소유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③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토지굴착을 하려는 자는 지번, 지목, 면적, 사용목적, 사용기간 등이 적힌 토지굴착동의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소유권자의 토지굴착에 대한 동의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p>	<p>②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온천굴착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p>

온 천 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p>부하여 온천굴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천굴착신고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p> <p>⑤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일 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허가받은 굴착공사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기간 이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인정 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⑥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3조(원상회복의무 등) ①제21조제2항의 규정</p>	<p>④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토지굴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의 만료일 30일 전까지 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 토지 소유권자의 토지굴착동의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 굴착동의서의 동의기간은 연장하려는 허가의 유효기간 이상이어야 한다.</p> <p>제14조(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p>	<p>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지 소유권자의 온천굴착사용 동의서 (타인소유 토지를 굴착하려는 자로 한정 한다) 2. 온천굴착지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복구계획서 및 굴착단면도(각각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부존가능성 조사결과보고서 <p>③제2항에 따른 굴착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일 현재 굴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신고인의 소유권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p> <p>④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 소유권자의 온천굴착사용 동의서에는 지번, 지목, 면적, 사용목적, 사용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p>

온 천 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p>에 의한 온천발견 신고의 수리가 취소되었거나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이용허가가 실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p> <p>②시장·군수는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 안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를 굴착한 자에 대하여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p> <p>③원상회복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행보증금의 금액, 예치의 시기·방법·절차 및 이행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시기 등) ①법 제16조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거나 법 제21조에 따라 온천발견의 신고를 하는 자는 허가 또는 신고 시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가 발행한 지급보증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보증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나.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다.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라.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 	

온 천 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p>보증기금</p> <p>마.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p> <p>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 공제조합</p> <p>사.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 조합</p> <p>아.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p> <p>4. 제1호 각 목에 따른 금융회사나 채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에금증서</p> <p>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p> <p>②이행보증금의 금액은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되, 보증금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p> <p>③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법 제16조에 따른 온천이용허가의 경우 : 온천이용허가일부터 허가가 실효 또는 취소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p> <p>2. 법 제21조에 따른 온천발견신고의 경우 : 온천발견신고일부터 온천발견신고 수리일까지</p>	<p>제7조의2(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①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p> <p>1. 온천공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지표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벽 등의 제거·절단 비용과 되메움 비용</p> <p>2. 그 밖에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p> <p>②제1항에 따른 제거·절단비용 및 되메움 비용 등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p>

온 천 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p>제14조(동력장치설치의 허가) ①온천의 채수를 위하여 동력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치허가를 받은 동력장치와 동일한 성능의 것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시장·군수는 동력장치의 설치로 인하여 다른 온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p>	<p>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자가 원상회복을 하거나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이 지난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p> <p>⑤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원상회복의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이 부족하게 된 때에는 원상회복의무자에게 부족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행보증금을 사용한 후 잔액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의무자에게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p> <p>제15조(동력장치의 설치 및 허가 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력장치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동력장치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구청장은 온천공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해당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p> <p>제8조(동력장치의 설치허가신청) 영 제15조에 따른 동력장치설치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p>

온 천 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p>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동력장치를 설치할 때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수문관측시설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p> <p>제15조(온천보호를 위한 토지굴착 제한) ①누구든지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p>	<p>제16조(지하수 개발 허가)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p>	<p>제8조의2(수문관측시설) ①법 제14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수문관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위측정관(안쪽 지름이 30밀리미터 이상인 내열·내압성관을 말한다) 또는 수위측정장치 2. 유량계 3. 온도계 <p>②온천원이 같은 다른 온천공에 설치된 수문관측시설을 통하여 수위등의 측정이 가능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문관측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문관측시설은 온천공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p> <p>제9조(지하수개발 허가신청) 법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허가신청은</p>

온 천 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p>안에서는 지하수를 개발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가정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시장·군수는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 안에서 건설공사 등 온천수를 용출시킬 목적 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도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온천수의 용출량 또는 성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될 때에는 토지를 굴착하는 자에게 기존 온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토지를 굴착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p> <p>제16조(온천의 이용허가) ①공공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용을 허가할 수 있는 온천수의 수량은 적정한 양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p> <p>②온천은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을</p>	<p>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시설의 업무용 2. 농업용수 공급용 3. 법 제16조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온천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1일 양수량을 기준으로 30톤 이내로 사용하려는 경우 <p>제17조(온천의 이용허가)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목욕용으로 허가신청을 받은 특별</p>	<p>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p> <p>제10조(온천의 이용허가신청)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p>

온 천 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p>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공중의 음용이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및 숙박업에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다만,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이용하고도 남을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따라 온천을 난방 및 에너지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에 이용할 수 있으며,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p> <p>③시장·군수는 온천의 이용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p>	<p>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온천이용계획서 2. 법 제19조에 따른 수질검사서 또는 그 사본 3. 온천공 현황(양수시험 결과를 포함한다) 4. 온천의 공급계약서 또는 그 사본(이용허가 신청자와 온천공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p>②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용을 허가할 수 있는 온천의 양수량은 온천전문기관이 검사한 적정 양수량의 범위에서 온천이용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양으로 한다.</p> <p>③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법 제5조제1항 전단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법 제10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p>	

온 천 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p>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온천의 이용을 허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온천우선이용권자일 것 2.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지역 또는 지정 예정지 안에 목욕장·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에 해당되는 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등 기존의 온천이용 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일 것 ④제3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될 때까지 온천의 일시적 이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1일 적정 양수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⑤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에 따른 양어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사목에 따른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3.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온 천 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p>④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온천과 관련된 거짓 또는 과장의 표시·광고행위를 할 수 없으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온천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p> <p>⑤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제24조에 따른 온천</p>	<p>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기능성화장품의 제조시설</p> <p>4.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일반의약품의 제조시설</p> <p>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시설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p> <p>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스키장 및 수영장 시설</p> <p>제18조(온천과 관련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행위 금지) ①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온천과 관련된 거짓 또는 과장의 표시·광고행위는 온천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표시·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p>	<p>제10조의2(온천표시)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온천표시는 별표 2와 같다.</p>

온 천 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p>자원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연장기간을 결정하거나 허가량을 조정하여야 한다.</p> <p>제16조의2(온천이용허가 시 인·허가등 의제)</p> <p>①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제16조에 따른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 또는 세탁업의 신고 2.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담배소매인의 지정 3.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서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 	<p>제19조(허가를 위한 조사 의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온천전문검사기관에 조사 또는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p>	

온 천 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p>업으로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p> <p>5.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유흥시설설치의 인정(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p>③시장·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온천이용을 허가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p> <p>④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p> <p>제17조(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 등) ①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의 목욕용으로 제공되는 온천에 대하여는 「공중위생관리</p>		<p>제11조(온천의 수질기준 등) 법 제17조에 따라 공중의 목욕용으로 제공되는 온천의 수질기준과 검사방법에 대하여서는 별표 3을 적용한다.</p>

온 천 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p>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욕용 온천수의 수질검사의 방법 그 밖에 수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p> <p>제18조(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 시장·군수는 온천의 이용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산업용 또는 난방용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가 지하수를 섞어서 사용한 때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온천종사자 또는 당해 온천이용시설의 관리자에 대하여 보건·위생상 위해에 대한 예방 및 온천이용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제19조(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①온천종사자(산업용 또는 난방용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p>		<p>제12조(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등) ①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의 검사기관, 검사주기, 검사항목과 같은 항</p>

온 천 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p>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시장·군수가 행하는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질검사의 주기는 1년으로 하고 성분검사의 주기는 5년으로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성분의 경우에는 성분검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p> <p>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제27조제1항에 따른 규정에 의한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은 자는 검사의 결과와 온천의 온도, 금기증, 목욕용 또는 음용상의 주의사항 및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온천이용시설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p> <p>④시장·군수는 수질 및 성분 검사 결과 온천으로서의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p>		<p>단서에 따른 특정성분의 검사주기는 별표 4와 같다.</p> <p>②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을 자(이하 “검사대상자”라 한다)에게 유효기간이 만료되기전 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검사대상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대상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검사기관을 정할 수 있다.</p> <p>④법 제19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온천에 포함된 성분의 치료효과 등 온천의 이용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p>

온 천 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p>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검사결과에 따라 온천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p> <p>제20조(온천의 공동급수) ①시장·군수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공동급수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급수를 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공동급수에 따른 사용료 그 밖에 공동급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제21조(온천발견의 신고 등) ①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는 온천의 위치·깊이·온천공의 지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13조(온천발견신고의 수리등) ①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별지 제10호서식에 온천공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지적현황측량성과도와 제3항에 따른 온천공 검사보고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온 천 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발견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온천의 수온·수량·수질 등에 대하여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작성한 온천공검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검사 결과 당해 온천을 개발·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③온천발견을 신고한 자는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신고시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p> <p>④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취소하고, 신고 수리된 온천공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온천공이 발견된 위치 2. 발견경위 3. 발견내용 : 온천공의 개수, 지름과 깊이, 온도 및 1일 적정 양수량 4. 발견지역의 여건 <p>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온천의 개발·이용의 가치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영 제2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2. 1일 적정 양수량이 300톤 이상일 것. 이 경우 1일 적정 양수량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1일 적정 양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수에 따른 수위강하 범위는 48시간 동안 양수하였을 경우 기준수위로부터 100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나. 1일 적정양수량은 단계양수시험 후 기준수위로부터의 수위강하량의 95%의 수위회복률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3. 인근 온천 및 지하수공에 대한 영향유무

온 천 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p>1.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후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p> <p>2.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개발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p> <p>3.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후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신청(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지정 또는 개발계획의 수립을 말한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p> <p>4. 제5조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p> <p>5. 제10조에 따른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p> <p>⑤삭제</p> <p>제22조(온천발견 신고 수리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발견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p> <p>1. 기존 온천공과 발견신고공의 수평거리가 1천미터 이내인 경우</p> <p>2. 발견신고공이 위치한 토지가 개발제한</p>		<p>4. 온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등 공익상 피해 여부</p> <p>5. 온천 수요전망 및 주변여건</p> <p>6. 온천발견신고자가 발견신고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p> <p>③온천발견신고를 하려는 자는 온천발견신고를 하는 때에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전문검사기관이 별표 5에 따라 작성한 온천공검사보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대상 온천공의 붕괴 등으로 온천발견신고를 하는 때에 온천공검사보고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천발견신고를 하려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기한을 늦추어 온천공검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p> <p>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온천공검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하여야 하고, 신고수리된 신고인이 당해 온천공이</p>

온 천 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p>구역이나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위치하는 경우</p> <p>3. 그 밖에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23조(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 등) ①시장·군수는 온천우선이용권자에게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 안에서 토지를 굴착하게 하거나 온천의 이용을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온천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그 일부를 용자·알선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온천우선이용권자는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p>있는 토지 및 온천개발예정지역내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온천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⑤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온천원이 같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 2이상의 온천발견신고가 있는 때에는 온천발견신고서의 접수순서에 따른 선순위자의 신고공에 대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온천공검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선순위자의 신고공에 대한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하고 그 다음 순위이하의 자의 온천발견신고서는 이를 지체없이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선순위자의 신고공에 대한 검사결과 그 신고공이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순위자의 온천발견신고서를 반려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신고공에 대하여 검사한 후 온천발견신고를 수리 또는 반려하여야 한다.</p> <p>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온천우선이용권자</p>

온 천 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p>제24조(온천자원의 보전·관리) ①시장·군수는 온천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p>		<p>로부터 온천개발면적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굴착허가 또는 온천의 우선이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기 전이라도 허가하여야 한다.</p> <p>제13조의2(온천발견신고의 반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천발견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온천발견신고자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검사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삭제 3. 온천발견신고자가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 등의 내용 및 절차 등에 위반하여 온천을 발견한 경우 <p>제14조 삭제</p>

온 천 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p>인정하는 때에는 온천자원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온천자원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②시장·군수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온천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온천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p> <p>③온천자원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는 온천자원조사가 실시될 때까지 새로운 온천에 대한 발견신고를 수리할 수 없으며 온천이용허가나 이용허가의 연장 등을 할 수 없다.</p> <p>④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온천자원조사를 제27조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15조(온천자원의 보전·관리) ①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온천자원조사는 적정양수량, 수위변동상황 및 수질·성분의 변화등 온천의 특성을 대상으로 온천이용허가일부터 5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온천원의 부존량과 부존범위를 포함시킬 수 있다.</p> <p>②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조사결과 온천자원의 고갈가능성이 있거나 오염으로 인한 보건·위생상 위해가 인정되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③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온천관리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p> <p>④ 삭제</p> <p>제16조 삭제</p>

온 천 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p>제24조의2(온천자원의 관측·정보체계 구축)</p> <p>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의 계획적·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온천자원 관측 시설을 설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자원 및 수위변동 실태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자료 및 그 밖에 온천수 보전·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온천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시설의 설치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온천관리 정보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5조(출입검사 등) ① 시장·군수는 필요하</p>	<p>제20조(온천자원의 관측)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온천자원 및 수위변동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온천공보호 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별로 하나 이상의 온천자원 관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온천자원 관측시설을 통하여 온천의 수위변동, 온천수 이용량, 온천수의 온도 등을 상시 관측하여 기록하여야 한다.</p>	<p>제17조(허가증의 교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12조제1항, 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온 천 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p>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온천시설 및 온천이용시설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온천시설의 관리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온천의 온도 2. 온천의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여부 3. 온천이용 허가량 초과 사용여부 4. 온천이용 배관시설 상태 5. 온천이용 허위·과장광고 여부 6. 온천이용 허가 시 준수사항 이행 여부 7. 그 밖에 온천이용에 필요한 사항 등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제26조(온천종사자 교육) ①온천종사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온천종사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p>		<p>제18조(관계공무원 출입증표)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p> <p>제18조의2 삭제</p> <p>제19조(온천종사자 교육)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시간은 연간 4시간으로 하며, 그 밖에 교육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온 천 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p>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교육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온천종사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p> <p>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제27조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포함시켜야 하며, 교육실시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④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 전의 위생교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7조(온천협회의 설립 등) ①온천종사자는 온천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적 유지관리 및 온천종사자의 권익 향상 등을 위하여 온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p> <p>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p> <p>③협회를 설립할 때에는 온천종사자 20명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p>		

온 천 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p>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④협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성립한다.</p> <p>⑤협회 정관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7조의2(협회의 사업 등) ①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온천의 건전한 발전과 협회 회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온천이용시설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지도·감독 3.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온천과 관련하여 위탁하는 조사·연구사업 <p>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회에 이 법에 따른 사업의 위탁으로 사용되는 경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제21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온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설립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내용 5. 회원의 자격 6. 임원의 정수·임기 및 선출방법 7. 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8. 이사회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협회의 조직·구성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절차 	

온 천 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p>제28조(대도시에 관한 특례) 제5조·제9조 및 제10조를 적용함에 있어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로 본다.</p> <p>제29조(시정요구)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이 법에 의한 승인·신고수리·허가를 함에 있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p> <p>제30조(청문)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허가의 취소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이용허가의 취소 <p>제31조(수수료) 제12조제1항·제14조제1항 및</p>	<p>②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2조(수수료) ①법 제31조에 따른 수수료는</p>	

온 천 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p>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나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또는 성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 또는 제12조제4항의 온천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온천을 이용한 자 3. 제9조제3항 또는 제16조제4항을 위반한 자 4.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발견신고를 허위로 한 자 <p>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p>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질검사 또는 성분검사가 협회에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수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토지의 굴착 허가 : 공당 6만원 2.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온천의 용출구 확대 또는 심도증가 허가 : 공당 3만원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력장치의 설치 허가 : 개소당 3만원 4. 동력장치의 변경허가 : 개소당 1만5천원 5.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온천의 이용허가 : 건당 10만원 6.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 건당 2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수질검사항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7.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성분검사 : 건당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성분검사에 드는 원가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온 천 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p>아니하고 동력장치를 설치한 자</p> <p>2.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하수를 개발한 자</p> <p>3.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수량을 초과하여 온천수를 사용한 자</p> <p>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문관측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p> <p>2. 제18조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p> <p>3.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p> <p>4. 삭제</p> <p>제35조(벌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p>	<p>②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탁 기관이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기준을 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③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온 천 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p>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7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와 음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온천종사자 <p>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다.</p> <p>③삭제</p> <p>④삭제</p> <p>⑤삭제</p>		

온 천 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굴착허가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굴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제1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굴착허가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p> <p>제3조(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온천발견신고의 수리에 대한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 계산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p> <p>제4조(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등 절차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온천원보호지구로 신청·지정되었거나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또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을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온천의 성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온천 발견신고를 하는 온천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승인의 신청이 있거나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4조제1항에 따른다.</p> <p>제4조(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의 절차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온천원보호지구로 신청·지정되었거나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또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을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성분검사 주기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제1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성분검사 결과를 통보받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온천발견 신고의 수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0005호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종전의 별지 제10호서식의 온천발견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그 신고의 수리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온 천 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p>제5조(굴착사용동의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한 굴착사용동의서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제7조제3항에 따른다.</p> <p>②이 영 시행 전에 제출한 굴착사용동의서 유효기간의 다음 날부터 법 제12조제5항 및 법률 제10005호 온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굴착허가의 유효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제13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토지굴착동의서의 동의기간을 굴착허가 유효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여 제출할 수 있다.</p> <p>제6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0년 11월 17일까지는 제14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은행”을 “금융기관”으로 본다.</p> <p>제7조(온천이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온천의 일시적 이용허가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10</p>	

온 천 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p>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p> <p>②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온천의 일시적 이용 허가를 받은 자는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③대통령령 제15107호 온천법시행령개정령 부칙 제2항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이 영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②「온천법」 제2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 사무를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온천협회에 위탁한다.</p>	

[별표 1의2] <개정 2010.8.11>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제4조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2차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나. 이 기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제7조제3항제1호	등록취소	
2.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법제7조제3항제2호	등록취소	
3.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제7조제3항제3호	등록취소	
4. 정당한 사유없이 온천전문검사를 기피·지연하는 경우	법제제7조제3항제4호	영업정지6월	등록취소
5. 허위로 검사하거나 검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법제7조제3항제4호	등록취소	
6.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7조제3항제5호	영업정지6월	등록취소

[별표 1의3] <개정 2007.9.18>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제6조 관련)

온천개발면적(제곱미터)=66.2×일일적정양수량(톤)

비 고

1. 삭제(2003.12.30)
2. 온천개발지역의 토지가 온천개발자의 소유일 경우 100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추가로 개발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08.3.24>

온천표시(제10조의2 관련)



비 고

1. 온천표시 : 짙은 파란색 (Pantone 293 C), 파란색(Cyan 100%)
2. 글씨 : 파란색(Cyan 100%)

※ 이 표시판의 규격은 현장사정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할 수 있습니다.
 온천표시 및 글씨는 유사한 계통의 색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글씨는 온천, 溫泉, HOT SPRING으로 단독 또는 병기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온천이용허가업소 외에는 이와 유사한 표시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별표 3] <개정 2007.9.18>

온천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방법(제11조관련)

1. 욕수의 수질기준

- 가. 원수 : 총대장균균을 검사하되, 총대장균균은 100mℓ 중에서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나. 욕조수(浴槽水) : 총대장균균을 검사하되, 1개를 초과하여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수질검사방법

- 가. 원수의 총대장균균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에 따르고 욕조수의 총대장균 검사는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른 총대장균균 시험방법 중 평판집락시험방법에 따른다.
- 나. 욕조수의 총대장균균을 검사하는 경우에 채수방법은 욕조의 대각선(욕조에 대각선이 없는 경우에는 욕조의 양쪽 끝간의 거리가 가장 긴 지점을 연결한 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욕수를 3등분하여 물의 표면에서 같은 양의 욕수를 채수하되, 균일하게 혼합하여 1개의 시료로 사용한다.
- 다. 총대장균균 시험용 시료는 멸균된 100mℓ 이상의 용기를 이용하여 무균적으로 채취하고 한번 채취된 시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저온(10℃이하)의 상태로 6시간 이내에 검사실로 운반하여야 하며 검사기관은 시료채취 후 24시간 이내에 분석을 시작하여야 한다.

[별표 4] <개정 2010.8.11>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의 검사기관·검사주기 및 검사항목
(제12조제1항관련)**

구분	검사기관	검사주기	검사항목
수질 검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행할 수 있으며,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연 1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주기전에 직권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인체에의 유해여부 (음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음용적합여부를 포함한다)
성분 검사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5년마다 1회. 다만, 유황성분(total S-2 성분 함량), 유리탄산(free CO2) 성분의 경우는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주기 전에 직권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요성분 2. 온도 3. 이용에 따른 효과 4. 이용에 있어서의 주의사항

[별표 5] <개정 2010.8.11>

**온천공검사방법 및 검사보고서 작성항목
(제13조제3항관련)**

1. 온천공 검사방법
 - 가. 물리검층, 온도검층
 - 나. 단계양수시험
 - 다. 장기양수시험(48시간)
 - 라. 성분검사

2. 온천공검사보고서 작성항목
 - 가. 개요(위치 및 검사범위 등)
 - 나. 지형 및 지질
 - 다. 검사공 현황 및 수위변화
 - 라. 물리검층과 온도검층
 - 마. 단계양수시험
 - 바. 장기양수시험
 - 사. 양수시험시 수온·간이수질 변화
 - 아. 성분분석 및 해석
 - 자. 종합결과(용출온도, 1일 적정 양수량, 성분 등)
 - 차. 시험성적서 등 관련자료 첨부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10.8.11>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상호(명칭)		법인번호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업종			
	주사업장소재지			
	자격기준	전문인력	장비	
	영업개시 연월일	년	월	일
「온천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4조제3항에 따라 온천전문검사기관의 □ 등록을 신청합니다. □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2. 「온천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및 장비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비를 임차한 경우에는 그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합니다) 3. 「온천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변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중인 등록증과 해당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처리절차



신청인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10.8.11>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 대장

등록번호	등록 년월일	사업개시 년 월 일	근거법령		
상호(명칭) 및 사업장 소재지	법인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보유인력	보유장비				
변동사항	상호,명칭 (신청일)	법인번호 (신청일)	사업장 소재지 (신청일)	대표자명 (신청일)	생년월일 (신고일)
보유 인력	보유 장비				

297mm×210mm[보존용지(1종) 120g/㎡]

제 호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증

1. 상호 또는 명칭 :
 2.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
 3. 대표자 주소 :
 4. 영업소 소재지 :
 5. 영업의 종류 :
 6. 등록조건 :

「온천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온천전문검사기관으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온천개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

「온천법」 제1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온천개발계획(변경된 온천개발계획)과 그 승인(변경승인) 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신청 내용	위 치			
	면 적			
	사유 및 기대효과			
온천 현황	용출온도	℃	성분유형	
	적정 양수량	톤/일	수위강하량	m

- 붙임 : 1. 지리적 여건
 2.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이 필요한 사유(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변경하려는 사유)
 3. 예정지구 안의 토지조서
 4. 예정지구 안의 온천자원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5. 예정지구 면적의 타당성 및 온천의 경제성 검토결과보고서
 6. 다른 지역개발계획과의 관련성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승()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2010.8.11>

온천굴착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굴착위치			지목	
내용	심도	구경	채수량 m ³ /일	
공사기간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시공자	대표자	상호	면허번호	
사유				

「온천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온천굴착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토지 소유권자의 온천굴착사용 동의서(타인소유 토지를 굴착하려는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2. 온천굴착지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없음
	3. 복구계획서 및 굴착단면도(각각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4.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부존가능성 조사결과보고서	

처리절차



신청인

특별자치도·시·군·구

특별자치도·시·군·구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8.11>

동력장치설치(변경)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허가번호 및 연월일	허가 제 호(년 월 일)			
설치장소				지목
설치 또는 변경내용	마력	용출량	m ³ /일	
설치기간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사유				

「온천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동력장치설치(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동력장치의 설계도서	수수료 설치 : 개소당 3만원 변경 : 개소당 1만5천원
	2. 수문관측시설 명세	

처리절차



신청인

특별자치도·시·군·구

특별자치도·시·군·구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8.11>

지하수 개발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법인 또는 기관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개발내용	위치			
	면적(㎡)			
개발시설 설치내용	깊이(m)	직경(mm)	채수계획량(㎡/일)	
	개발기간	사용용도		
사 유				

「온천법」 제1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 허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_____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지하수개발지역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1:1, 200) 1부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신청인 _____ 특별자치도·시·군·구 _____ 특별자치도·시·군·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0.8.11>

온천이용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급수자	성명			
	주소			
목적	이용량		㎡/일	
이용기간	이용개시일자	년	월	일
이용업소명	소재지			

「온천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_____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온천의 이용계획서 2. 법 제19조에 따른 수질검사서 또는 그 사본 3. 온천공현황(양수시험결과를 포함합니다) 4. 온천의 공급계약서 또는 그 사본(온천이용 허가신청인과 온천공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건당 : 10만원
------	---	----------------------

처리절차



신청인 _____ 특별자치도·시·군·구 _____ 특별자치도·시·군·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0.8.11>

온천관리대상 ()온천

(앞 쪽)

온천소재지							
온천 발견상황	온천법 제정 전부터 이용한 지역			온천법 제정 후 신규 지정된 지역			
	최초이용시기(연대)			발견신고일자	수리신고일자	발견자 인적사항	
온천공이 발견된 토지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주소	소유자 성명	
	지정일자	지정면적	온천전문검사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			검사기관명	검사기간			
	1일 적정 양수량	개발적정면적	굴착공수	용출온도			
개발계획수립 및 개발추진상황	수립일자	개발계획면적				비고	
		계	온천이용시설	상업시설	공공시설	녹지시설	기타시설
	개발주체	총사업비		사업기간	개발후 수익액	시설계획	
	개발방식 (개발면적)	행정조치사항(조치일자)				개발추진 상황	
		국토이용 계획변경	도시계획변경	관광지 지정	환경영향평가	기타조성 계획승인	
온천현황	온천공	온천공수	이용허가공수	미허가공수 (폐공수)	심도 (최고~최저)	지표부터미수위 (최고~최저)	공내안정수위 (최고~최저)
	온도 및 수량	온도 (최고~최저)	일일 적정 양수량 (톤/일)	허가가능량 (톤/일)	이용허가량 (톤/일)	천질 (주요성분)	응용가능여부
	효능						
이용현황	이용객		1일최대 수용능력	이용시설			
	1일최대	1일평균	연간이용객	계	호텔	여관	온천장
온천자원 보전관리	온천자원 조사실적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실적		수문관측 시설설치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주기 조사기관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사주기 검사기관 검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위측정관(내경 30mm이상의 내열·내압성관) 또는 수위측정장치 유량계 온도계 		
온천자원 보전관리 조치상황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0.8.11>

제 호

허가증

- 성명 :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
- 주소 :
- 위치 :
- 허가종별 :
- 허가내용 :
- 허가기간 :
- 허가조건 :

「온천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앞 쪽)

제 호

온천출입검사원증

(유효기간 :)

사 진

3cm×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기 관 명

55mm×85mm[보존용지(1종)120g/m²]

(색상 : 하늘색)

(뒤 쪽)

온천출입검사원증

소속/직급 :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온천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온천이용시설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온천시설 및 온천이용시설에 출입하여 온천수의 온도·성분·유출량 및 이용상황 등을 검사할 때에는 이 검사원증을 내보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온천 법령집

인 쇄 : 2010년 8월

발 행 : 2010년 8월

발 행 처 : 행정안전부 지역녹색성장과

Tel. 02) 2100 - 2817

Fax. 02) 2100 - 2749

인 쇄 처 : 파피루스 신경인쇄 02)2273-6384



www.mopas.go.kr